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제 목 대학수학능력시험 시 난독증 수험생 편의 미제공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합니다.
2. 교육부장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난독증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난독증 수험생에 대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18진정0593500 대학수학능력시험 시 난독증 수험생에 대한 편의 미제공



나. 진정인 별지 1 기재 목록과 같음

다. 피해자 김태훈

라. 피진정인 1. 교육부장관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3. 경기도교육감

마. 진정요지

2007. 난독증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난독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는 2018. 11.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난독증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시간 내에 시험을 보기가 불가능하여 피진정인 2와 3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시간을 연장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피진정인 2와 3은 난독증 수험생의 경우에 관련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험특별관리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시험시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러한 통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해당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 3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함에 있어 일정 기준 이상의 시각, 청각, 운동 장애 등으로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을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시

험의 공정성과 수험생 간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험 시 응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시행세부계획에 따라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점자, 확대·축소 문제지, 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하며, 기타 입원 중인 수험생 등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은 시·도교육감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별도 시험실 배치 등의 편의가 제공될 것이다. 그런데 난독증은 장애 인복지법령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시험특별관리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향후 난독증 등 기타 장애수험생에 대한 시간연장 등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데 필요한 해당 장애증상별·장애정도별 편의 제공 사항 연구,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세밀한 검증 방법 개발, 편의 제공 사항 적용에 따른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검토사항이 있는 만큼 단시간 내 제도개선이 힘든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 개정 추이 및 장애가 있는 수험생에 대한 연구·검토, 관련 기관과의 협의, 타 수험생과의 형평성 제고 및 중장기적으로는 정부부처 차원의 각종 시험 시행 시 장애수험생들에 대한 일관성 있는 편의 제공 지침 마련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는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지만, 2018. 11. 15.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여 과학기술대에 입학한 것이 확인되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II. 의견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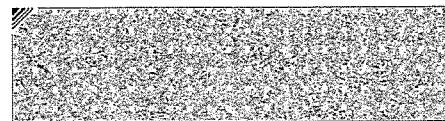
1. 의견표명의 배경

난독증은 학습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외부적이거나 환경적인 요인이 아닌 개인의 내적 요인(신경학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핵심적인 특성은 느리고 부정확한 단어 읽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대학입학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에서 난독증 학생들에 대하여 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난독증이 장애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독증 수험생에게는 어떠한 편의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는 난독증 수험생에 대하여 다른 수험생과 동등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권리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했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 시 난독증 수험생 편의 미제공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

가.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읽기와 쓰기 능력의 발달이 심각하게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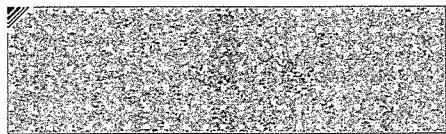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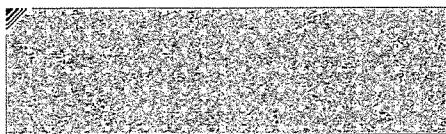


연되어 초등학교 1학년 때에 난독증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약물 및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나 읽기능력은 영구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난독증세를 보이고 있다.

난독증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증세가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기에 이로 인해 학업적·사회적·직업적 영역에서의 종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난독증을 갖고 있는 수험생에게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시험 조건을 부여한다면 난독증 수험생은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을 끝내기 어려워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를 상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도 갖지 못할 수 있기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상할 수 있다.

나. 「고등교육법」 제34조 제4항에서는 시험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 기구 지침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가 있는 수험생들을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는 장애인이 아닌 수험생과 동등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고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에 교육부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위 법에 따라 매년 장애인 수험생에 대한 시험 응시 시 편의 제공 대상 및 내용 등



편의제공 계획을 담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특별관리대상자는 등록 장애인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상 별도의 장애증명이나 복지카드 발급이 되지 않는 난독증상자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의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시험특별관리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난독증 수험생에 대해서는 시험연장 등의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난독증처럼 비록 등록 장애유형에 포함되지 않지만 읽기 등 학습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읽기능력 등이 필요한 시험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에 해당할 것이므로, '등록장애인'이라는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특별관리대상자 지정 및 편의 제공 기준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4항의 시험 관련 편의제공 대상자로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 난독증처럼 학습장애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키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라 「특수교육법」상 장애인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23개 회원국에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시험 시에 난독증 학생에게 시간 연장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난독증을 특정학습장애로서 장애범주에 포함시켜 대학입학시험인 SAT, ACT 등과 같은 입학시험에서 시간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영국도 난독증을 장애범주에 포함시켜 대



학입학을 위한 고등학교 최종 졸업시험격인 GCSE에서 난독증을 포함한 학습장애 학생들에게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하며, 홍콩도 난독증 학생들에게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수준의 대학입학 표준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국가, 그리고 특수교육법으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국가에서는 대체적으로 특수교육법상 장애학생에 대한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난독증 학생을 포함한 학습장애 학생들의 시험편의에는 시험시간 연장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나,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편의도 제공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위 SAT 시험 시에 난독증 외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학습장애, 정서장애, 턱 및 뚜렷장애 등 보다 다양한 장애에 대해서도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의 외국의 사례와 같이 난독증 수험생에게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학습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안(「교육기본법」제26조 제1항)으로,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난독증 수험생에 대한 편의 지원 시 부작용 및 악용될 소지가 예상된다면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난독증의 정의, 난독증상자 현황, 난독증으로 인한 학습장애의 정도와 피해 등 기본적인 현황이나 조사, 연구조사 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장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난독증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난독증 수험생에게 필요한 편의와 그 편의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

요가 있다.

III.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12.

위 원 장 정문자

정 문자

위 원 임성택

임성택

위 원 서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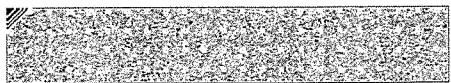
서미화



<별지1>

진정인 평단

1.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2. 한국난독증협회
3. 한국아동·청소년상담학회
4.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5. 한국언어치료학회
6. 한국학습장애학회



<별지2>

관련규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교육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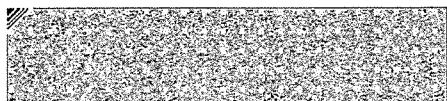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 ① 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와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 교육제도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3.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침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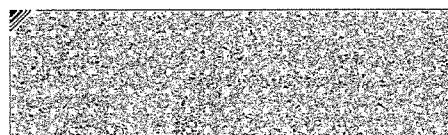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4.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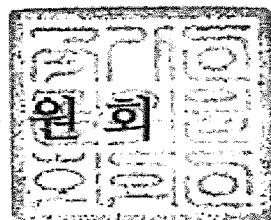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위 정본입니다.

2020.09.01

국가인권위



행정주사보 김나연

